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9. 24 선고 2015가합10563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6. 16 선고 2015나102069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9. 24 선고 2015가합10563 판결

전문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변론 종결 2015. 9. 10.

판결 선고 2015. 9. 24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187,858원 및 그 중 483,183,961원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4. 6.까지 연 12%,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1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4. 10.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C은 부안등기소 2014. 10. 22. 접수 제17884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
 - 다. 피고 D은 부안등기소 2014. 11. 19. 접수 제195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
3. 가. 별지 2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E 사이에 2014. 10.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97,116,1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97,116,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F,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한다.
6.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1 내지 3항. 별지 3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F, G 사이에 2014. 10. 23.1) 체결된 매매계약을 69,368,6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F, G은 원고에게 각 34,684,3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은 신용보증계약상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가 2015. 2. 12.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일부 회수하였다.

(금액 단위 : 원)

보증계약 일	보증금액	대 출은행	대위변제 일	대위 변제금	회수금	확정지연손해금	대출금잔액 2)4 87,135,524원 - 3,951,563원
2004. 1. 19.	484,000,00 0	농협중앙 회	2015. 3. 4.	487,135,52 4	3,951,56 3	3,8973)3,951, 563원 × 연 12%(약정 지연손해금율) ×3일(2015. 3. 4. ~ 2015. 3. 6.)/365일, 원 미만 버림	483,183,961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187,858원(대출금 잔액 483,138,961원 + 확정지연손해금 3,897원) 및 그 중 대출금 잔액 483,138,961원에 대하여 2015. 3. 4.부터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4. 6.까지 연 12%,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피고 A은 별지 1항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1. 피고 C과 매매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2014. 11. 19. 피고 D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피고 A은 별지 2항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7. 피고 E과 매매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은 별지 3항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3. 피고 F, G과 매매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6.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제2, 3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제2, 3계약 체결 전에 농협은행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517,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근저당권은 제2, 3계약체결 후인 2014. 11. 6. 말소되었다.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433,515,150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2014. 10. 21. 제1계약, 2014. 10. 23. 제3계약, 2014. 10. 27. 제2계약이 각 체결된 후인 2015. 3. 4.에서야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연대보증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대출금채무 상환을 연체하여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 A, B이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소외 회사는 제1 내지 3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5. 1. 16. 회생신청을 하였고,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2015. 2.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결국 원고가 2015. 3. 4.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구체적 · 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A, B의 채무 초과 여부

갑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A은 제1, 2계약 체결 당시 계약 목적물인 제1, 2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제1, 2부동산의 가액은 약 3억 7,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4)

를

비롯하여 농협은행에 대하여 2억 400만 원, 전북은행에 대하여 8,424만 원 합계 약 7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 B도 제3계약 체결 당시 계약 목적물인 제3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제3부동산의 가액은 2억 5,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비롯하여 광주은행에 대하여 50억 8,560만 원, 농협은행에 대하여 17억 4,400만 원 등 합계 약 8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 A, B은 제1 내지 3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초과 상태인 피고 A, B이 제1 내지 3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피고 A,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 E, F, G, 전득자인 피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 C,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 E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 2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않거나,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피고 C	피고 A에 대하여 9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로서 채무 변 제 명목으로 제1부동산을 받은 것이다.
피고 E	제2부동산이 당시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고, 피고 A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먼저, 제1, 2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90다카271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C이 피고 A에 대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A에게 재산을 제공한 제1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서 사해행위가 되고, 제2부동산이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2계약역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다음으로, 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제1 내지 3계약은 소외 회사가 2015. 1. 16.회생신청을 하기 불과 3개월 전에 체결되었고, 2014. 10. 21.부터 2014. 10. 27.까지 불과 1주일 사이에 체결된 점, ② 피고 C은 소외 회사와 2013. 12.경부터 사업상 거래를 해오면서 소외 회사와 피고 A, B의 재산 상태를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③ 피고 C이 피고 A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이전받으면서 그들 사이에 얼마가 변제된 것으로 정리하였는지, 충당되는 채무는 어떤 채무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을바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C,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F, G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바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F, G이 피고 B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거나 제3계약 체결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 B의 재산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제3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직접 체결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졌고, 시가 상당액이 매매대금으로 정해진 점, ③ 제3계약의 계약금은 200만 원에 불과하고, 제3계약 체결 당시 제3부동산에는 그 시가보다 높은 금액인 채권최고액 517,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 F, G이 농협은행에 167,515,150원을 지급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그 금액만큼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으며, 나머지 매매대금도 피고 B에게 지급된 점, ④ 피고 F, G은 현재 제3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F가 2015. 5. 25. 22:33 제3부동산에서 소장을 송달받았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 G은 제3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3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F, G에 대한 제3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피고 C

약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피고 C의 제1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주문 2의 나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약의의 전득자로 인정되는 피고 D은 주문 2의 다항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E

약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피고 E의 제2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제2부동산에 대하여 제2계약 체결 전에 농협은행 앞으로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이 제2계약 체결 후인 2014. 11. 6. 말소되어 제2부동산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므로, 피고 E은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갑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0. 27.경 제2부동산의 시가는 350,000,000원,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인 제3부동산의 시가는 250,000,000원이고, 말소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433,515,150원이므로, 피고 E이

가액배상할 금액은 제2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피담보채권액을 공동담보의 각담보별 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뺀 97,116,162원(350,000,000원 - (433,515,150원
 $\times$ 350,000,000원/600,000,000원5) ,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이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제2계약을 97,116,1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은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97,116,162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이형주 판사 이우용 판사 유지상

별지

1)2015. 8. 17. 변경된 청구취지 4의 가항에 기재된 "2014. 10. 27."은 "2014. 10.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487,135,524원 - 3,951,563원

3)3,951,563원 $\times$ 연 12%(약정 지연손해금율) $\times$ 3일(2015. 3. 4. ~ 2015. 3. 6.)/365일, 원 미만
 버림

4)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5) 350,000,000원 + 250,000,000원